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899호)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7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혼성주 주종 분류 신설 및 세율 적용 근거 마련(안도결의원안, 박수영의원안)	3

I. 개요

1.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89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4. 17.

(3) 회 부 일 : 2025. 4.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나 탁주와 달리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2.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7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30.

(3) 회 부 일 : 2025. 10.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주류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알코올 도수에 관계 없이 주류 가격을 기준으로 72퍼센트의 세율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이볼 등을 건강하게 음미하고 즐기는 주류문화가 확산되는 등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가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대다수가 리큐르로 분류되어 72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되는 등 고도주에 비해 저도주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증류주 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약주, 과실주, 청주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저도주에 대한 차등 과세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음. 프랑스는 알코올 도수 18도를 초과시 사회보장세를 과세하고, 영국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알코올 도수별 세율을 적용하

고 있음. 일본도 저알코올 증류주와 리큐르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음. 또한 EU 지침은 알코올 도수 1.2도에서 8.5도 사이의 주류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하고 100분의 30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혼성주류 주종 분류 신설 및 세율 적용 근거 마련(안도결의원안, 박수영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주류의 종류(제5조제1항) ○ 주정 ○ 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일주 ○ 증류주류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신 설> ○ 기타 주류	☐ 혼성주류 주종 분류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혼성주류(박수영의원안)</u> ○ (현행과 같음)
☐ 세율(제8조제1항) <신 설>	☐ 혼성주류 세율 적용 근거 신설 ○ <u>혼성주류: 100분의 30(박수영의원안)</u>
☐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별표) <신 설>	☐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별표) ○ <u>혼성주류: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박수영의원안)</u>
○ 기타 주류(별표 제4호)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100분의 72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100분의 30 <신 설>	○ 기타 주류(별표 제4호)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u>증류주에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고 알코올분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100분의 30(안도결의원안)</u>

다. 쌀 및 입국(粒麴: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100분의 72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100분의 72	<u>원안)</u> 라. (현행과 다목과 같음) 마. (현행과 라목과 같음)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	---

* 안도결의원안 2025. 4. 17. 발의(의안번호 9899), 박수영의원안 2025. 9. 30. 발의(의안번호 13378)

☐ 현행법에서는 주류를 제조방법, 첨가된 재료 등을 고려하여 발효주류,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로 분류하고 있고 혼성주(混成酒)는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있는데,¹⁾ 2건의 개정안 중 박수영의원안은 혼성주를 주류의 종류에 별도로 포함시키고, 별표에 혼성주류의 정의를 신설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며, 안도결

1) 「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 가. 탁주
 - 나. 약주
 - 다. 청주
 - 라. 맥주
 - 마. 과일주
3. 증류주류
 - 가. 소주
 - 나. 위스키
 - 다. 브랜디
 - 라. 일반 증류주
 -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의원안은 별표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의 한 종류로 정의하여 마찬가지로 30%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²⁾

□ 혼성주(混成酒)는 법률상 개념으로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발효주, 증류주 또는 주정(酒精)³⁾과 같은 알코올 수용액(水溶液)을 기본 원료로 하여, 여기에 과일, 향료, 약초, 과즙 등 색깔과 맛, 향기를 내는 다양한 재료와 당분을 첨가해 제조한 술로, 흔히 리큐르(liqueur)라고 불리고 있음.

다만, 혼성주는 「주세법」상 증류주류 주종 중 하나인 리큐르와 개념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으며, 기반이 되는 술의 종류, 첨가된 재료 및 불휘발분에 따라 일반 증류주, 리큐르 등을 포함한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 등에 해당할 수 있음.

□ 현행법 제5조, 제8조 및 별표에서는 주류를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음.⁴⁾

2) 안도걸의원안은 혼성주를 알코올분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박수영의원안은 혼성주를 알코올분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주정(酒精)은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효된 술을 증류하여 얻은 고농도의 순수한 에탄올(ethyl alcohol)을 의미하며, 흔히 에탄올 또는 알코올이라 불림. 즉, 주정은 여러 가지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료 알코올로 무색투명하고 독특한 향이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알코올 농도를 지니고 있음.

4) 「주세법」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00원

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주류의 종류에 따른 세율 현황]

주류의 종류		주세율
주정		57,000원/kl(알코올 9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마다 600원 가산)
발효주	탁주	44,400원/kl
	맥주	885,700원/kl
	약주·과실주·청주	30%
증류주류		72%
기타주류		10%~72%

한편, 증류주류에 대해서는 불휘발분⁵⁾이 2도 미만일 경우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로 구분하고, 2도 이상일 경우 리큐르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증류주류 비교(별표 제3호)]

구분	소주 (가목)	위스키 (나목)	브랜디 (다목)	일반증류주 (라목)	리큐르 (마목)
기준	불휘발분 2도 미만	불휘발분 2도 미만	불휘발분 2도 미만	불휘발분 2도 미만	불휘발분 2도 이상
원료	녹말원료 (곡류) + 국물 발효	발아된 곡류(보리 등) 발효	과실주 (포도 등) 또는 과실주 지게미 증류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당밀, 주정 등	증류주 + 첨가재료(과 일, 허브 등)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5) 불휘발분(不揮發分, non-volatile matter)이란 술을 가열하거나 증발시켰을 때 날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성분을 의미함. 여기서 "불휘발분 2도 이상"의 의미는 전체 주류에서 알코올과 물 등의 휘발성 성분을 제거한 후 남아 있는 고형성분(설탕, 향료, 색소 등)이 주류 용량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불휘발분 기준은 주류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품질 관리 수단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당분과 향료 등이 첨가된 혼성주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구분	소주 (가목)	위스키 (나목)	브랜디 (다목)	일반증류주 (라목)	리큐르 (마목)
제조법	- 연속식 증류 제외 - 숯 여과 시 자작나무 숯 사용 금지	- 발효된 술덧 증류 - 오크통 숙성	- 과실주 증류 - 오크통 1년 이상 숙성	- 다양한 원료 발효·증류 - 노간주나무 열매 / 식물 첨가 가능	- 증류주에 당류·향료 첨가 - 불휘발분 증가

자료: 「주세법」 별표 재구성

참고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증류주류 출고금액은 기준 4조 374억원이며, 이 중 소주가 3조 8,92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리큐르, 일반증류주, 위스키, 브랜디 순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증류주류 제조면허 및 출고금액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합계
면허수	266	16	9	390	187	868
출고금액	3,892,655	5,676	1,844	36,891	100,339	4,037,405

자료: 국세청

□ 한편, 2024년 전체 주종별 음용률 조사에서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는 30.9%를 기록하며 첫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주(37.2%)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나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20~40대에서는 하이볼 음용률이 각각 36.8%, 35.6%, 35.9%로 높게 나타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와인, 위스키, 증류식 소주는 전 연령대에서 음용률이 감소하

거나 정채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23년 ~ 2024년 주종별 음용률 현황]

	2023년 전체 (1,000)	2024년 전체 (1,000)	20대 (209)	30대 (236)	40대 (276)	50대 (279)
일반 맥주	83.5	84.9	81.3	86.0	86.6	84.9
일반 소주	71.5	72.4	74.2	74.2	70.3	71.7
막걸리/동동주/탁주	34.0	37.2	28.7	37.7	37.7	42.7
하이볼	-	30.9	36.8	35.6	35.9	17.6
위스키	25.0	23.4	23.4	33.9	23.9	14.0
와인	27.1	20.4 (▼6.7%p)	14.8 (▼9.2%p)	24.6 (▼7.4%p)	23.9	17.6 (▼8.6%p)
증류식 소주	19.5	16.7 (▼2.8%p)	17.2 (▼6.3%p)	23.3 (▼6.2%p)	17.0 (0.0)	10.4

주: 2024년 조사에서 신규 보기로 하이볼 음용률이 추가됨

자료: 주류 소비 트렌드 리포트 2024, opensurvey, 2024. 7.

□ 그런데, ‘저도수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주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류주류와 차이가 있고,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약주, 과일주, 청주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 방식 역시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현행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⁶⁾

특히,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 과일소주 등 저도수 혼성주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증류주류 또는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6) 개정안의 제안이유

[혼성주와 다른 주류와의 비교]

구분	저도수 혼성주	고도수 혼성주	맥주	탁주
도수	5~10도	15~40도	4~5도	6~7도
당도	낮음~중간 (가당 여부에 따라 다름)	중간~높음 (보통 가당된 경우 많음)	낮음 (당분 거의 없음)	중간 (쌀 당화로 자연 발생)
세율	72% (종가세)	72% (종가세)	885,700원/kℓ (종량세)	44,400원/kℓ (종량세)
예시	하이볼, 과일소주	보드카, 럼, 칵테일	라거, 에일	막걸리

□ 이에 개정안은 혼성주류의 정의를 신설(박수영의원안)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혼성주류를 기타 주류의 한 종류로 정의(안도걸의원안)하여 30%의 세율을 적용⁷⁾하도록 함으로써, 도수(5~10도) 및 소비방식(맥주·탁주 유사성)을 반영하여 혼성주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 주세법 체계는 제조방법, 첨가된 재료 등을 고려하여 발효주류,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발효주 및 증류주와 구분되는 하나의 특성을 가진 별도 주종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세부적 분류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7) 「주세법」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기타 주류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별표] 4. 기타 주류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 관련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저도수 혼성주에 대한 명확한 알코올분 도수 정의와 함께, 국·외산 리큐르 및 혼성주의 세부 제품별 출고·통관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동 자료가 미집계되고 있어 개정안의 세수효과에 대한 객관적 추계가 어려운 입장임.
- 참고로,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혼성주는 다양한 원료·종류·가격대 제품 개발이 가능하여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맥주·탁주와 같이 대중 소비형 주류로 확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수 혼성주에 대한 주세율의 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경우 K-주류 제품의 개발·수출 등 혼성주 산업의 성장 및 국내 농업·식품 산업,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가세 과세대상 주류는 제조방법 등에 따라 발효주류와 증류주류로 크게 구분하여 각각 30%, 72%의 세율을 적용 중이므로 소비형태, 도수를 기준으로 일부 증류주류를 별도 주종으로 분류하거나 달리 과세하는 것은 현행 주세체계에 불부합하고, 국민건강 영향, 타 주종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주류에 대한 세부담 하향조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

참 고

타국 주세 과세사례 (저도주 감면 관련)

- (일본) 종량세 과세체계 내에서 증류주류는 주류의 용량 및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양조주류 등은 주류의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
 - 증류주류의 경우 주류 용량 및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기본세율을 두고 일정도수 기준 초과 1도당 추가세율 적용 방식
 - 알콜도수에 따라 과세하는 증류주 중 저도주에 대해 기본세율부와 기준을 낮게 설정(발효주의 경우 해당 감면 없음)

<주요 주종 주세율>

주종		알코올분	1kl당 주세율
발포성 주류	맥주		181,000엔
	발포주		134,250~181,000엔(맥아 비율 등에 따라 차등)
	기타 발포성 주류		80,000엔
양조주류	청주, 과실주, 그 외 양조주		100,000엔
증류주류	소주	21도 미만 21도 이상	200,000엔. 초과하는 1도마다 10,000엔 가산
	위스키, 브랜디, 스피릿	37도 미만 37도 이상	370,000엔. 초과하는 1도마다 10,000엔 가산
혼성주류	합성청주		100,000엔
	리큐르 등	13도 미만 13도 이상	120,000엔. 초과하는 1도마다 10,000엔 가산
	기타주	21도 미만 21도 이상	200,000엔. 초과하는 1도마다 10,000엔 가산

<저도주 주세율>

주종	알코올분	1kl당 주세율
증류주류, 리큐르 中 아래 충족 ① 발포성 없음 ② 알코분 13도 미만(리큐르는 12도)	9도 미만 9도 이상	기본세율 80,000엔. 초과하는 1도마다 10,000엔 가산

□ **(영국)** 종량세 과세체계 내에서 발효주류·증류주류 모두 주류의 용량 및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과세

○ 알코올 도수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알콜도수 반영

주종	알콜분별 1L당 주세율					
맥주	0~1.2%	1.3~3.4%	3.5~8.4%		8.5~22%	22%~
	0.00 £	9.61 £	21.78 £		29.54 £	32.79 £
사이다*	0~1.2%	1.3~3.4%	3.5~8.4%		8.5~22%	22%~
	0.00 £	9.61 £	10.02 £		29.54 £	32.79 £
스파클링 사이다	0~1.2%	1.3~3.4%	3.5~5.5%	5.6~8.4%	8.5~22%	22%~
	0.00 £	9.61 £	10.02 £	25.67 £	29.54 £	32.79 £
증류주, 와인, 기타 발효주 등	0~1.2%	1.3~3.4%	3.5~8.4%		8.5~22%	22%~
	0.00 £	9.61 £	25.67 £		29.54 £	32.79 £

* 사과주스 또는 사과 농축액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

□ **(EU 지침)** 종량세 과세체계를 지침으로 하고 있음

○ 8.5도 이하 주류에 대한 감면은 와인 등 발효주류에 적용되고 있으며, 증류주류의 경우 저도수 감면은 지침상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됨

※ EU Rules for the taxation of alcohol (EU 홈페이지 내 게시) 중

주종	저도수 감면 여부
와인, 기타 발효주 등	알코올분 8.5도 이하
맥주	알코올분 3.5도 이하

자료: 기획재정부